

2022 표준 수입계약서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2022 표준수입계약서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○ **사용허가조건(안) 및 대부계약서(안)**

- **사용허가조건(안)**과 대부계약서(안)의 내용은 대부분 같음. 다만, 아래의 부분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
- ‘**사용허가**’, ‘사용료’, ‘허가’, ‘사용인’ 등 용어를 ‘대부’, ‘대부료’, ‘계약’, ‘임차자’ 등으로 수정하여 사용
 - 청문 의무(**사용허가조건(안)** 제14조 제2항)는 행정재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, 대부계약서에서는 삭제
 - **지도감독에 관한 사안(사용허가조건(안) 제20조)**은 행정재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, 대부계약서에서는 삭제

2021 표준수입계약서	2022 표준수입계약서(안)	비 고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ackground-color: #e0f2f1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 text-align: center;"> 공유재산 유상/무상 <u>사용·수익허가서</u> </div> <p>□ 재산의 표시 (생략)</p> <p>□ 신청안 (생략)</p> <p>20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/무상 <u>사용·수익허가</u>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(및 특약사항)을 붙여 그 사용·수익을 허가합니다.</p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ackground-color: #e0f2f1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 text-align: center;"> 공유재산 유상/무상 <u>사용허가서</u> </div> <p>□ 재산의 표시 (생략)</p> <p>□ 신청안 (생략)</p> <p>20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/무상 <u>사용허가신청</u>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(및 특약사항)을 붙여 그 사용·수익을 허가합니다.</p>	<p>·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(사용·수익허가 → 사용허가)</p>

2021 표준수입계약서	2022 표준수입계약서(안)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행정재산 사용·수익 허가조건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행정재산 <u>사용허가</u>조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(사용·수익허가 → 사용허가)
<p>제1조(사용·수익 목적) ① 서울시설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은 <u>사용·수익허가</u>를 받은 자(이하 “사용인”이라 한다)가 <u>사용·수익의 허가</u>를 받은 재산(이하 “허가재산”이라 한다)을 ○○○ 목적으로 사용·수익하는 것을 허가한다.</p>	<p>제1조(사용·수익 목적) ① 서울시설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은 <u>사용허가</u>를 받은 자(이하 “사용인”이라 한다)가 <u>사용허가</u>를 받은 재산(이하 “허가재산”이라 한다)을 ○○○ 목적으로 사용·수익하는 것을 허가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(사용·수익허가 → 사용허가)
<p>제2조(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기간) ① <u>사용·수익의 허가</u>를 받은 기간(이하 “사용허가기간”이라 한다)은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부터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로 한다.</p>	<p>제2조(사용허가를 받은 기간) ① <u>사용허가</u>를 받은 기간(이하 “사용허가기간”이라 한다)은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부터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로 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(사용·수익허가 → 사용허가)
<p>제5조(사용료 분할납부) ① (생략) ② 전항의 경우 사용인은 <u>사용·수익허가</u>개시일 전까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제14조 제9항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그 금액에 대하여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사용료 분할납부) ① (생략) ② <u>제1항</u>의 경우 사용인은 <u>사용허가</u>개시일 전까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제14조 제9항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그 금액에 대하여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의미 명확화를 위한 용어 통일 (전항 → 제1항) ·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(사용·수익허가 → 사용허가)
<p>제6조(사용료 반환) 공단은 <u>사용·수익허가</u>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 이후의 잔여 미사용 <u>사용허가</u>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을 사용인에게 반환한다. 다만 아래 각호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</p>	<p>제6조(사용료 반환) 공단은 <u>사용허가</u>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 이후의 잔여 미사용 <u>사용허가</u>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을 사용인에게 반환한다. 다만 아래 각호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 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(사용·수익허가 → 사용허가)

2021 표준수입계약서	2022 표준수입계약서(안)	비 고
<p>후 반환한다.</p> <p>1. 관리비 등의 체납액</p> <p>2. 기타 공단에 발생한 손해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☉ 공제할 손해인 각호의 내용은 각 부서의 사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</p> <p>* 예> 서울어린이대공원 : 계절적 요인으로 성수기에 1년 매출 달성 후 비수기에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, 각 호에 아래의 손해 추가 가능</p> <p>0. 새로운 사용인의 <u>사용·수익허가</u>개시일 이전까지의 사용료 (단 허가조건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경우로 <u>사용·수익허가</u> 취소된 경우 제외)</p> </div>	<p>반환한다.</p> <p>1. 관리비 등의 체납액</p> <p>2. 기타 공단에 발생한 손해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☉ 공제할 손해인 각호의 내용은 각 부서의 사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</p> <p>* 예> 서울어린이대공원 : 계절적 요인으로 성수기에 1년 매출 달성 후 비수기에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, 각 호에 아래의 손해 추가 가능</p> <p>0. 새로운 사용인의 <u>사용허가</u>개시일 이전까지의 사용료 (단 허가조건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경우로 <u>사용허가</u> 취소된 경우 제외)</p> </div>	
<p>제8조(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) ① (생략)</p> <p>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명의로 허가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, 사용인은 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허가재산 가액 이상의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</u>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명의로 허가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, 사용인은 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허가재산 가액 이상의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· 의미 명확화를 위한 용어 통일 (전항 → 제1항)</p>
<p>제10조(허가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) ① (생략)</p> <p>②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중 허가재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전항의 관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.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로 허가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10조(허가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) ① (생략)</p> <p>②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중 허가재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<u>제1항</u>의 관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.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로 허가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· 의미 명확화를 위한 용어 통일 (전항 → 제1항)</p>

2021 표준수입계약서	2022 표준수입계약서(안)	비 고
<p>제12조(비밀유지의무) 사용인은 <u>사용·수익허가</u>와 관련하여 취득한 공단의 비밀사항,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<u>사용·수익허가</u>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사전 승낙 없이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단, 이는 사용허가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다.</p>	<p>제12조(비밀유지의무) 사용인은 <u>사용허가</u>와 관련하여 취득한 공단의 비밀사항,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<u>사용허가</u>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사전 승낙 없이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단, 이는 사용허가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다.</p>	<p>·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(사용·수익허가 → 사용허가)</p>
<p>제14조(사용·수익허가의 취소)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<u>사용·수익허가</u>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의 경우 <u>사용·수익허가</u>개시일까지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. ~ 5. (생략) 6. 사용인이 <u>특약사항</u> 등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<u>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</u> 7. 사용인이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<u>사용·수익 허가</u>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<u>사</u> 	<p>제14조(사용허가의 취소)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<u>사용허가</u>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의 경우 <u>사용허가</u>개시일까지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. ~ 5. (생략) 6. 사용인이 <u>허가조건</u>, <u>특약사항</u> 등을 위반하여 <u>공단이 공익성, 사용허가의 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</u> <u>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</u> 7. 사용인이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<u>사용허가</u>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<u>사용</u> 	<p>·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변경 (사용·수익허가 → 사용허가)</p> <p>· 표준수입계약 문구 현행화 및 문구 조정(허가조건 및 특약사항 위반시 시정요구 불응으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문구 구체화)</p>

2021 표준수입계약서	2022 표준수입계약서(안)	비 고
<p>용·수익허가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</p> <p>② 공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6조의 청문 절차에 준하여 <u>사용·수익허가</u>를 취소하기 전에 사용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공단은 제1항의 <u>사용·수익허가</u> 취소로 인하여 사용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·보상하지 않는다. 다만,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<u>사용·수익허가</u>가 취소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.</p>	<p><u>허가</u>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</p> <p>② 공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6조의 청문 절차에 준하여 <u>사용허가</u>를 취소하기 전에 사용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공단은 제1항의 <u>사용허가</u> 취소로 인하여 사용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·보상하지 않는다. 다만,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<u>사용허가</u>가 취소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.</p>	
<p>제15조(사용·수익허가의 취소 요청)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중 <u>사용·수익허가</u>의 취소를 원할 경우 2개월 전에 <u>사용·수익허가</u> 취소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단은 명도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사용인의 요청으로 인한 <u>사용·수익허가</u> 취소시에는 사용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공단의 귀책사유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.</p>	<p>제15조(사용허가의 취소 요청)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중 <u>사용허가</u>의 취소를 원할 경우 2개월 전에 <u>사용허가</u> 취소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단은 명도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사용인의 요청으로 인한 <u>사용허가</u> 취소시에는 사용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공단의 귀책사유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.</p>	<p>·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(사용·수익허가 → 사용허가)</p>
<p>제16조(원상회복 및 명도) ① 사용인은 <u>사용·수익허가</u>가 종료되는 경우 사용인의 비용으로 공단 직원의 입회하에 허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공단에게 인도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허가재산이 원상태로</p>	<p>제16조(원상회복 및 명도) ① 사용인은 <u>사용허가</u>가 종료되는 경우 사용인의 비용으로 공단 직원의 입회하에 허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공단에게 인도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허가재산이 원상태로 반환</p>	<p>·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(사용·수익허가 → 사용허가)</p>

2021 표준수입계약서	2022 표준수입계약서(안)	비 고
<p>반환되었다는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로 허가재산을 인도하는 경우, 사용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허가재산 명도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사유로 <u>사용·수익허가</u>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공단과 합의한 날에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</p>	<p>되었다는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로 허가재산을 인도하는 경우, 사용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허가재산 명도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사유로 <u>사용허가</u>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공단과 합의한 날에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</p>	
<p>제17조(변상금의 징수) 사용인은 <u>사용·수익허가</u>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하거나 점유(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<u>사용·수익허가</u> 없이 허가재산을 계속 사용·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)한 경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17조(변상금의 징수) 사용인은 <u>사용허가</u>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하거나하거나 점유(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<u>사용허가</u> 없이 허가재산을 계속 사용·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)한 경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·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(사용·수익허가 → 사용허가)</p>
<p>(신 설)</p>	<p>제19조(안전·보건 확보의무) ① <u>사용인은 허가재산을 운영 및 관리하면서 사용인의 종사자 및 이용 시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보건상의 유해·위험 요인을 파악하고, 관련한 사건,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·위험요소를 발견, 확인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다.</u></p> <p>② <u>사용인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건, 사고 및 재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상의 책임을 진다.</u></p>	<p>·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시행에 따른 사용인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명확화</p>

2021 표준수입계약서	2022 표준수입계약서(안)	비 고
<p>제19조(허가재산에 대한 <u>지시</u>·감독 등) 공단은 공공·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인에게 <u>지시</u>·감독할 수 있고,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</p>	<p>제20조(허가재산에 대한 <u>지도</u>·감독 등) 공단은 공공·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인에게 <u>지도</u>·감독할 수 있고,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19조 신설로 인한 조문 번호 변경 · 공유재산업무편람 준용하여 지시·감독을 지도·감독으로 변경
<p>제20조(관계 규정의 준용)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»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»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다.</p>	<p>제21조(관계 규정의 준용) (현행과 동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19조 신설로 인한 조문 번호 변경

○ 특약사항(안) - **사용허가** 및 **대부계약** 공통

2021 표준수입계약서	2022 표준수입계약서(안)	비 고
<p>본 특약사항은 서울시설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과 <u>사용·수익허가</u>를 받은 자 ○○○(이하 "사용인"이라 한다) 사이에 체결되는 <u>사용·수익허가</u>의 이행에 관하여 허가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본 특약사항은 서울시설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과 <u>사용허가</u>를 받은 자 ○○○(이하 "사용인"이라 한다) 사이에 체결되는 <u>사용허가</u>의 이행에 관하여 허가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·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(사용·수익허가 → 사용허가)</p>
<p>제2조(대여료 납부) ① (생략)</p> <p>② 공단은 <u>전항</u>의 비품 등의 자연마멸 또는 정기보수로 인한 비용을 부담한다. 다만,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각종 보수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조(대여료 납부) ① (생략)</p> <p>② 공단은 <u>제1항</u>의 비품 등의 자연마멸 또는 정기보수로 인한 비용을 부담한다. 다만,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각종 보수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· 의미 명확화를 위한 용어 통일 (전항 → 제1항)</p>
<p>제3조(허가재산의 변경) 공단은 공용, 공익적 목적 또는 허가재산의 유지·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인과 사전 협의 후 허가재산 또는 허가재산 주변 시설물의 각종 공사 등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용인과 합의 후 허가조건 <u>의 사용·수익허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(허가재산의 변경) 공단은 공용, 공익적 목적 또는 허가재산의 유지·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인과 사전 협의 후 허가재산 또는 허가재산 주변 시설물의 각종 공사 등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용인과 합의 후 허가조건 <u>의 사용허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	<p>·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(사용·수익허가 → 사용허가)</p>
<p>제4조(시설물 유지관리 등) ① 사용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도면 및 사업계획을 첨부한 <u>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 비용은 사용인의 부담</u></p>	<p>제4조(시설물 유지관리 등) ① 사용인은 <u>공유재산 전체의 유지관리, 시설물 전체의 통일성, 다른 사용인과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</u>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도면 및 사업계획을 <u>첨</u></p>	<p>· 제1항 : 표준수입계약서 문구 현행화 · 제2항 : 신설. 사용인의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 및 시공책임 명확화 · 제3항 : 제2항 추가로 인한 조항 번호</p>

2021 표준수입계약서	2022 표준수입계약서(안)	비 고
<p>으로 한다. 이 경우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단이 지정한 책임자가 시공에 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(신 설)</p> <p>② 사용인은 전항에 따른 공사 등을 하는 경우 본래 구조물을 변경·훼손할 수 없으며, <u>사용·수익허가가 종료되는 경우 사용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부하여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② <u>사용인이 제1항의 공사 등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하고,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사용인의 책임 하에 시공한다.</u></p> <p>③ 사용인은 <u>제1항의</u> 공사 등을 하는 경우 본래 구조물을 변경·훼손할 수 없으며, <u>사용허가</u>가 종료되는 경우 사용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.</p>	<p>정리.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(사용·수익허가 → 사용허가)</p>
<p>제5조(허가재산 내의 출입권한) ① 공단은 허가재산의 보존, 시설의 조작, 점검, 방화, 위생, 구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사용인의 양해 하에 허가재산에 출입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다만,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사용인의 양해를 구하지 않더라도 허가재산에 출입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허가재산 내의 출입권한) ① 공단은 허가재산의 보존, 시설의 조작, 점검, 방화, 위생, 구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인의 양해 하에 허가재산에 출입할 수 <u>있다. 단, 허가재산의 보존 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급박한 경우에는 공단은 허가재산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용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.</u></p>	<p>· 제1항 : 표준수입계약서 문구 현행화 · 제2항 : 의미 명확화를 위한 용어 통일 (전항 → 제1항)</p>

2021 표준수입계약서	2022 표준수입계약서(안)	비 고
<p>② 사용인은 전항의 조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단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. 다만, 그 손해가 공단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② 사용인은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단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. 다만, 그 손해가 공단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
<p>제8조(행위제한) 사용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공용 시설물에 방해가 되는 간판, 광고물, 파라솔 등을 설치(공용면적에의 설치 포함)하거나 상품 등을 방치하는 행위(사용·수익허가 받은 범위를 넘은 점유 포함)</p>	<p>제8조(행위제한) 사용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공용 시설물에 방해가 되는 간판, 광고물, 파라솔 등을 설치(공용면적에의 설치 포함)하거나 상품 등을 방치하는 행위(사용허가 받은 범위를 넘은 점유 포함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(사용·수익허가 → 사용허가)
<p>제9조(책임과 의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사용인은 화기 및 전기·수도시설 등 제반 설치 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</p> <p>(신 설)</p> <p>③ 사용인은 허가재산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사용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</p>	<p>제9조(책임과 의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사용인은 <u>사용허가를 받은 허가재산의 사용·수익에 필요한</u> 화기 및 전기·수도시설 등 제반 설치 시설의 <u>안전관리 책임이 있다.</u></p> <p>③ <u>사용인은 영업종료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설비에 대한 전력을 차단하고 전열기구 및 방재 등의 안전여부와 시건장치 개·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사용인은 허가재산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사용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2항 : 사용인의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· 제3항 : 신설. 사용인의 화재예방 의무 강화 · 제4항~제6항 : 제3항 신설에 따른 정리 · 제5항 : 관련 법령 내용 구체화

2021 표준수입계약서	2022 표준수입계약서(안)	비 고
<p>소비자보호법, 세법, 노동관계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.</p> <p>⑤ 사용인은 국가, 서울시 또는 공단이 관계법령 또는 필요에 따라 각종 재난관련 조치, 훈련, 점검 등을 하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.</p>	<p>소비자보호법, 세법, <u>근로기준법</u>, <u>산업안전보건법</u>, <u>중대재해처벌법</u>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.</p> <p>⑥ 사용인은 국가, 서울시 또는 공단이 관계법령 또는 필요에 따라 각종 재난관련 조치, 훈련, 점검 등을 하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.</p>	
<p>제10조(재판의 관할) 이 <u>사용·수익허가</u>와 관련한 소의 제기 시 관할 법원은 허가재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</p>	<p>제10조(재판의 관할) 이 <u>사용허가</u>와 관련한 소의 제기 시 관할 법원은 허가재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</p>	<p>·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(사용·수익허가 → 사용허가)</p>
<p>본인은 상기 특약사항의 내용을 (충분히 숙지)하였으며, (무단전대 행위나 불법건축물 등의 설치를 하지 않고, <u>사용·수익허가</u> 종료시 원상회복하여 명도하겠음).</p>	<p>본인은 상기 특약사항의 내용을 (충분히 숙지)하였으며, (무단전대 행위나 불법건축물 등의 설치를 하지 않고, <u>사용허가</u> 종료시 원상회복하여 명도하겠음).</p>	<p>·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(사용·수익허가 → 사용허가)</p>